

코인원 유지 심사 기준

코인원은 더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반으로 거래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서 거래지원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행주체의 신뢰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보안사고 발생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적시에 적절한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신뢰성을 상실한 경우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가상자산이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는 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로서 이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이 신뢰성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 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보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규 준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회피, 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실제 이러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그 밖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위반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온라인 콘텐츠 기반 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가상자산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가 불충분하여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기술적으로 가상자산의 추가발행이 가능함에도, 해당 사실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설명 자료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는지 여부
질적 항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행, 운영, 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 이력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정도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및 정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의 존재 여부,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주요 지갑주소 공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규모, 가상자산의 온체인 거래현황 대비 시가총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가상자산 분배(Token allocation)가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상장법인일 경우, 가상자산 판매자금의 사용 계획 또는 사용 현황의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상충 가능성가상자산의 용도, 목적 또는 기능. 단, 온라인 콘텐츠에 기반하여 발행된 가상자산에는 이를 고려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의 실재성, 지속가능성(자원 확보없이 고율의 수익 약속 여부 등) 및 실제 진행 현황

질적 항목 검토

- 온체인 보유자 수 증감 추이, 국내외 거래량, 유동성,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지원 현황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거래 및 채택 현황
-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활성화도
- 거래지원하려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사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이해상충 해소 방안 마련 여부
-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지장되는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지나친 중앙화로 인한 집중 위험 존재 여부
-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의 중요 사건과 관련된 함수에 대한 접근 통제권(Access Control)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존립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존립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가상자산의 운영 또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미기재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유지심사 및 거래지원 종료심사를 포함한다)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유동성 조건 등

-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이 내규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 2분기 연속으로 분기중 30일 이상 40억 원 미만}, 회사의 거래규모가 내규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 2분기 연속으로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가상자산 중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자사거래소 및 타 원화거래소의 분기 일평균 거래회전율(일평균 거래규모/해당 분기말 이용자 보유잔액)이 모두 100분의 1에 미달} 등 거래지원을 유지함으로써 인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용자 보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지원심의·의결기구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본 심사기준은 코인원 거래소 회원이 거래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 본 심사기준은 코인원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코인원은 본 심사기준에 포 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심사기준에 근거한 의사 결정으로 손실이나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